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·산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과표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증원 승인되고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총수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정원조정 540 → 553(증13명-재난안전관리과 9명, 과표담당 4명)
 • 집행기관 529 → 542(증13명)
○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→ 조례로 정함 : 신설
 • 〔별표〕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관련) : 신설

3. 일부 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참고사항

가. 기구정원조정 계획
나. 정원 증원 승인관련 공문
다. 비용소요 추계서

라. 정원관리별, 직급별, 정원표(제3조관련)

마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바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05. 4. 19.~2005. 5. 9.(20일간)
-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군청홈페이지, 군·읍면게시판 등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540" 을 "553" 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"529" 를 "542" 로 한다.

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, 면 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의 제목 "(직급별)"을 "(직렬별)"으로 하고 본문중 "직급별"을 "직렬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2조(정원의 총수)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4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 : 529명 2. 의회사무과 : 11명	제2조(정원의 총수)…… ……553…… ……. 1.…… : 542 2.……	재난관리기구 및 과표담당 신설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
제3조 〈신 설〉	제3조(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, 면 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	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제4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본청,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렬별 정원)…… …… ……직렬별…… …….	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〈신설〉	[별표]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3조관련) 부 칙 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정원에 관한 경과조지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한시기구 정원 1명(5급)을 상시정원으로 한다.	